

의안번호	제 212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8월 2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의안 번호	212
----------	-----

제출연월일 : 2015년 8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 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수산사업 실시, 공공기관 유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도지사는 5년마다 해양 및 내수면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6조)
 -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
 -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정책 조정, 중요사항 심의 등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유치 (안 제9조 및 제10조)
 - 시설부지 확보 및 시설 건립 등의 비용 일부 지원 가능
- 육성사업의 지원 (안 제12조)
 - 사업대상자 :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어업인 등
 -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사업비 일부 지원 가능
- 해양 및 내수면 문화 창달 (안 제14조)
 - 국제행사 및 도민교육, 축제, 기반시설 등 사업비 일부 지원 가능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3.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자원을 말한다.
4.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정보·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6. “내수면산업”이란 내수면어업, 낚시, 수산물 및 수산식품 생산·유통·저장·판매·가공·전시홍보, 내수면바이오, 내수면과학기술개발,

내수면환경·방재, 내수면관광, 내수면레저·스포츠 및 내수면정보·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내수면 및 내수면자원·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산업 및 내수면산업(이하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 및 내수면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양 및 내수면 산업 정책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정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해양 및 내수면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 및 내수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도지사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부지 확보 및 시설 건립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부지 확보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외국기업 등의 유치) ① 도지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 및 내수면 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

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5. 그 밖에 해양 및 내수면 산업 관련 법인·단체·어업인

제13조(연구기관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해양 및 내수면 산업·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 및 내수면 포럼 등 국제행사
2. 해양 및 내수면 산업·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조성
3. 해양 및 내수면 관광·레저·스포츠 관련 행사·대회·기반시설
4. 해양 및 내수면 사상의 고취를 위한 도민교육 및 관련 시설 설치
5. 그 밖에 해양 및 내수면 산업·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제15조(정부와의 협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 및 내수면 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내수면 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 사항

제16조(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해마다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수산사업 실시, 공공기관 유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여비 등 비용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6조(해양 및 내수면 산업 정책 심의위원회)
 - ※ 수당 및 여비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있으면 지급 가능하여 원칙적으로 개별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 없음.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여비 등 경비 지급
- 나. 추계의 전제 : 위촉위원 10명, 회의 연 2회 개최
- 다. 추 계 결 과 : '16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000천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위촉위원 여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POOL 수당에서 지급(충북발전정책개발/도정참여제도운영/일반운영비)

6. 작성자 : 농정국 축산과장 신유호

관계법령 발취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책마련) ①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3 내수면 유어기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 5 내수면양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